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31권 제4호(2021) ISSN 2384-132X(Print) ISSN 2289-0564(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1: 31(4): 417-426
https://doi.org/10.15269/JKSOEH.2021.31.4.417

Original Articl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A Critical Review on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Jin-Woo Jung*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r each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ystem, content, and execution.

Methods: We examine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harmony with legal principles.

Results: The propo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hardly resolves the uncertainties of the law,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unclear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itself and that do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for it to serve as an accident prevention standard due to its low predictability an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accident prevention.

Conclusions: Ultimately, the law itself should be extensively reorganized in order to ensure universal and sufficient effectivenes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short term, ev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hould be reorganiz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afety principles.

Key words: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stitutional principles, accident prevention standard, law and safety principles

I. 서 론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여 늦게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분히 노동・시민단체의 압력에 힘입어 탄생되기는 하였지만,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부터가 법리, 안전관리 등의 관점에서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보니,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체계와 내용 및 집행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지나치게 광범

*Corresponding author: Jin-Woo Jung, Tel: 02-970-6373, E-mail: jjjw35@hanmail.net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01811, Korea
Received: September 29, 2021, Revised: October 27, 2021, Accepted: November 15, 2021
Jin-Woo Jung https://orcid.org/8910-6703-1234-123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위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을 따라야 할 수범자들은 법규준수 의지와 비용의 리스크보다는 법규내용의 비현실성과 불명확성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준법의지가 강한 수범자조차도 지킬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안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현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분석하여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법원리와 안전보건관리론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여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가지고 있는 법리상의 문제를 체계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집행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확정된 법안이 아니고 입법예고된 안에 불과한 것으로서 향후에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겠지만, 처음으로 제정되는 만큼 시행령의 입법예고된 법안 자체에 대해서 주요 쟁점별로 어떠한 취지와 의도로 규정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입법사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진단・분석하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진단・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도 포괄하여 진단・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를 진단・분석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논란과 비판에 휩싸여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시행령안'이라 한다)에 대해 재해예방의 실효성, 법체계의 정합성, 법원리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시행령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판례, 행정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법률 자체가 사회적 논의 없이 급하게 제정되어 학설도 사실상 백지상태인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만을 대상으로 고찰하되, 형법해석의 출발점인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논구하고자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체계상의 문제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시행령안 제4조와 제5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만을 위임근거로 삼고 있는바, 동법 제4조와 제5조의 본문 규정은 종사자 개념의 광범위함 때문에 보호 대상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4조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5조는 이러한 표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제5조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 조문의 규정은 외견상 유사한 것 같지만 엄격히 보면 분명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에서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제4조만을 근거로 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후술하듯이 시행령안의 규정이 수급인의 의무인지 도급인의 의무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의 개념에는 자사 근로자 외에 자사와 도급・용역・위탁관계에 있는 모든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뿐만 아니라, 도급계열에 있는 모든 관계수급인(제3자), 그의 직영근로자 외에 그와 도급관계를 갖는 모든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와 동법 제5조의 제3자의 종사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시행령안 제4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제8호만 적용되고 제1~7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라고 규정하여 다분히 '장소'를 기준으로 의무주체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예컨대 도급인(또는 발주자)(발주도 도급의 일종이다)이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으면 그것만을 이유로 도급인이 의무주체인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안 제4조 제1~7호와 제5조 제2항 제1~3호에 제4호 제8호의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제4조 제1~7호와 제5조 제2항 제1~3호의 의무까지도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급관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과 중대재해처벌법 간에 의무주체가 달라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산안법에서는 수급인에게 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로 해석되는 사항이 적지 않다. 예컨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등의 경우 산안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인(또는 수주자)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는 도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수범자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매우 불명확하고 이를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행령안 제4조 제8호의 의무가 도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1차 수급인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2차 수급인, 3차 수급인 등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종사자'의 정의상 모든 도급・용역・위탁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가 모두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전체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구조로 되어 있고, 산안법은 벌칙 전체가 결과적 가중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산안법이 이미 많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안법보다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안법보다 가중적인 표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조치기준이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거나, 중한 결과의 정도 또는 범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보다 중한 결과이거나 좁아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는 죄질과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산안법 등 기존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가 없는데도 중벌에 처하는 조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안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상당수가 보호법익 측면에서 산안법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법정형만 크게 상향시켜 놓고 있다. 예컨대, 산안법에서는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사항(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행령안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보면, 그 내용이 산안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완화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안법보다 가중처벌할 규범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시행령안 제4조 제1호, 제3호, 제6호는 산안법상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산안법상의 규정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산안법 제22조)의 경우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율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다. 즉 불법의 정도, 죄질, 비난가능성이 산안법보다 오히려 약한 상태이다. 이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한 결과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있어서도 사망의 경우 산안법과 동일하고, 질병의 경우에는 시행령안에서 중증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행령안에 열거된 24개 질병에 대해서는 산안법보다 오히려 확대되어 있는 점도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안법에서는 그간 질병성 사망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중대재해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중대재해조사 대상에서는 여러 이유로 제외되어 온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형적인 직업성 질병 외에 업무적 요인이 일부 관련되는 작업 관련 뇌심혈관계질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질병성 사망을 아무런 예외 없이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점도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별도의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하면 산안법 등 기존의 안전보건관계법상의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Constitutional Court, 2014; Constitutional Court, 2015a).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들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내용(죄질), 방법(행위의 태양), 결과발생의 정도 등 가중처벌의 규범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법의 피적용자가 과잉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책임주의 원칙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강한 형벌이 수반되면 될수록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보다 오히려 구성요건을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다르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범죄의 행위불법이 산안법의 기본범죄의 그것보다 약한 것도 발견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과 비교하여 보호법익, 범행방법, 신분(산안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의무주체(위반행위자)를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벌규정의 행위자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또한 중요한 의무주체로 상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범자의 신분에 있어 두 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등 별도의(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 없이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Constitutional Court, 2004; Constitutional Court 2015b; Constitutional Court 2019).

4) 법령 간의 모순・충돌

체계상으로도 같은 법령 내 조항 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안 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 간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이 적지 않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의무주체의 요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법 제5조의 의무주체의 요건(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외양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엄격히 보면 명백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는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해소하는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종사자'의 개념이 이미 도급계열에 있는 모든 노무제공자를 포함하고 있어 '종사자'와 '제3자의 종사자'는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그 보호대상이 동일한 상황이고, 제4조와 제5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또한 동일한 상태임에도, 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장소적 관념만을 기준으로 의무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시설, 장소'라는 장소적 관념뿐만 아니라 '장비, 기타'라는 비장소적 관념을 포함하는 요건으로 의무주체를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법에서 동일한 보호대상과 의무를 놓고 조문 간에 의무주체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협력사가 장비를 소유하고 관리할 경우, 장비에 대해서만큼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협력사가 의무주체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장비의 소유・관리 여하에 관계없이 장소를 지배하는 도급인이 의무주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법률과의 부정합성, 시행령안 규정 간의 모순이 적지 않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행령안 제4조 제6호에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상 도급계열에 있는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자사 근로자만을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하수급인 사업주는 제외된다)만으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호 간에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산안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산안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이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보조적으로 수행(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 연계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산안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산안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상호 배치・충돌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규정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시행령안 제4조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규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 규정은 같은 조 제4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규정과 중복될 소지가 크다.

2. 내용상의 문제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시행령안에는 불명확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 즉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시행령안에서 보충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아 법의 위헌성이 그만큼 더 커지고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서 준법의지가 아무리 강한 경영책임자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밑줄은 필자).

〈제4조〉

제3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충실하게 수행
제4호: 적정한 예산
제5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제8호: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제5조〉

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제2항 제2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항 제3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련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제4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1조〉

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제1호: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2호;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충분한 상태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적정 규모로 배치, 적정한 업무를
제2호: 충분한 상태로,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제3호: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제4호: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제6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호: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8호: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3조 제2항〉

제2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이상과 같은 개념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Supreme Court, 1998).

예를 들면, 시행령안 제4조 제3호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산안법에는 해당 관계자의 법정 직무를 정하고 이것에 한정되어 있는 데 반면, 매우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라고만 표현하면, 안전보건이 품질, 성능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보건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업무인지 매우 불명확하게 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형벌이 수반되지 않거나 과태료 정도가 부과되는 규정이라면 모를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강한 형사처벌이 따르는 법의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규정한 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법적 근거 없는 지침, 매뉴얼 등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 또는 위임입법에 근거하지 않고, 즉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행정규칙(고시, 예규 등)도 아닌 지침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과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 법문상의 표현만으로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사람마다 답변과 판단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규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범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법령상의 의무가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여 해당 의무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다.

그런데 경영책임자 선임 또는 지정 보고제도가 없어 이를 통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집행기관이 임의적으로 경영책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방효과도 담보하지 못하거니와 자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시행령안에서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예시 형식으로라도(예: 대표자의 차상위자)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을 만큼 매우 불명확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지배, 운영, 관리가 상호 간에 '또는'의 관계인지, '및'의 관계인지부터가 알 수 없고, 지배의 주체, 운영의 주체, 관리의 주체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행령안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 외에 집행명령도 있는바, 법률에 의한 별도의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 세칙을 집행명령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Han, 2011a). 헌법 제75조 후단은 법집행의 자의적 행사를 배제하고 통일성・형평성・합리성 등을 기하기 위해 법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인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Kwon, 2010). 그럼에도 시행령안은 집행명령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안에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중대시민재해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안에서 이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별표 5)과 모순되기도 한다.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해석을 한다면,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경영책임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 하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제3자의 종사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 도급・용역・위탁관계에 있는 자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도급・용역・위탁관계의 최상위 조직(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시설 및 기계・설비적 영

역 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영역, 작업관리적 영역, 작업행동적 영역의 안전보건조치까지를 직접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령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도급인이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하수급인과 업무상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독립사업자까지도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이들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수많은(그러면서 해당 여부가 모호한) 법령, 그것도 법령에서 위반 시 벌칙(형사처벌, 과태료)이 수반되어 있는 조항뿐만 아니라 벌칙이 수반되어 있지 않은 조항까지도 이행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시행령안 별표 1의 24개 질병에만 해당하면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경증질병(B・C형 간염,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이 발생한 것만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되고, 산업재해의 일종인 출퇴근 재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 야유회, 회식 중에 사망한 사고도 중대산업재해가 되는바,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까지 그 방지를 위하여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하수급인과 업무적으로 관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독립사업자에 대해서까지, 그것도 사실상 모든 영역(기계설비적 영역, 안전보건관리체계 영역, 작업관리적 영역, 작업행동적 영역)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규정된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예외 없이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해서만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과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Han, 2011b, Lim, 2021).

4)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정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유무죄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위반자와 위반 여부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강명령을 강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수강명령을 사실상 처벌의 연장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복수인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영책임자 중에서 법 위반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수사도 하지 않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침해행위의 위헌・무효와 더불어 침해행위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므로(Constitutional Court, 2005; Constitutional Court 2006; Constitutional Court 2010),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을 이유로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해당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수사도 하지 않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법위반에 책임이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바,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장관이,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이 과연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할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하도록 강제할 것인지 등도 관심사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집행기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조직 간에 많은 트러블과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강을 함으로써 유무죄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많은 경영책임자는 과태료 부과받는 것을 감수하고 수강하지 않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후에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원칙에도 부합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시행령안에서 이러한 방향과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현실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항도 발견된다. 산업보건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

한되어 있어(산안법 시행령 제30조)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수범자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산업보건의를 구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임의제도로 사문화된 것을 인력수급 사정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것도 매우 강한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재해예방에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이 든다.

6) 표현상의 문제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과 법의 적용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또는'이라는 단어로 병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호 관련된 조직하에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반면,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인바, 두 단어가 차원이 다른 개념임에도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적용범위(대상)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한 결과, 사업과 사업장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표현상의 문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정이 아니라 선임을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자는 지정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라 지정된 자"(밑줄은 필자)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있다.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에서 '확인'과 '평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가목과 나목의 보유 또는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집행상의 문제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안전보건'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나 사전적 의미로나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이에 대한 용어정의나 적용범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 개념이 형사처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식·휴게, 나아가 임금은 안전보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령도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포함될 수 있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도 안전보건에 대한 주의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형법도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화학물질관련법, 소방관계법, 광산안전관계법, 철도·항공안전관계법, 원자력안전관계법, 전기안전관계법, 가스안전관계법, 건설안전관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승강기안전관계법, 감염병예방관계법, 환경관계법, 국방안전관계법, 재난관리관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연구실안전관계법 등 수많은 법이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국내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법령은 법률만으로 한정하여 좁게 보더라도 30개가 넘고, 사람마다 그것의 범위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피적용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결과 법운영 당국의 자의적 집행이 불을 보듯 훤하다(Jung, 2021).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

안전보건관계법령에는 고용노동부와 관련되지 않은 법령이 매우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용노동부가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은 법률만 하더라도 30개가 훌쩍 넘는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을 담당하는 관계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만 족히 10개가 넘을 것이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산안법만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법위반 여부의 판단 및 법위반 사항의 적발 등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예: 원자력안전관계법, 가스안전관계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평상시에 그 법령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부처의 안전보건관계법령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까지 근로감독관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등에서 전문성의 큰 공백을 초래하고 수사 전반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전문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권한(제155조)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다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점검 등을 할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범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명령과 벌칙을 통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까지는 일반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수사를 담당하여 왔는데, 이 분야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수사까지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되면, 일반경찰에 추가하여(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반경찰은 어차피 업무상과실치사죄 수사를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이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수범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두 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분히 중복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혼란과 부담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안전보건관계법 의무이행 점검기관의 모순

시행령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되, 산안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에는 산안법령 외에 다른 부처가 주무부처인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산안법령만 다루도록 되어 있어 그 외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업무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4.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중대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사업주 측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고 산업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 측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산업재해로 판단되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중대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방어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종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형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주 측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민감하게 대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최고경영진에 해당하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것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벌금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형사소송과 더불어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방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산재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회사 측은 산재승인으로 인해 형사처벌, 민사배상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즉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은 종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과정에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종전에는 업무기인성 유무에 대해 논란이 많은 질병성 재해 중심으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업무수행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성 재해(예: 사업장 내 교통재해, 체육행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까지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종전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초질환(개인적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이

작용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기초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애당초 채용하지 않거나 고용조정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등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Ⅳ. 결 론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과중한 처벌에 의존하는 것보다 범죄구성요건을 정교하고 수범자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준법의지가 있는 수범자조차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법령은 아무리 처벌수준을 높이더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커녕 오히려 중대재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법규범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켜 법 준수를 형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재해예방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벌에 의존하는 것보다 재해예방행정조직을 전문화하고 재해예방법제를 선진화하며 재해예방인프라를 강화·확충하는 재해예방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이러한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추었을 때 엄벌이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은 처벌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건이 얼마나 충실한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법률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사실상 거의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령안 자체에서 불명확하고 헌법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불명확하고 위헌요소가 적지 않은 상태로는 예측가능성이 낮아 효과적인 재해예방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고, 그 결과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위헌소송과 위헌결정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이 법을 보편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어렵다면, 당장은 시행령안이라도 법리와 안전보건원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폭 정비·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 예방에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만 들어가고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 중대재해 예방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일반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Constitutional Court 2004.12.16. 2003heonga12(All-inclusive agreement) Decision. 2004
Constitutional Court 2005.5.26. 2002heonma699 Decision. 2005
Constitutional Court 2006.5.25. 2004heonba12 Decision. 2006
Constitutional Court 2010.9.2. 2010heonma418 Decision. 2010
Constitutional Court 2014.4.24 2011heonba2 Decision. 2014
Constitutional Court 2015.2.26. 2014heonga16·19·23(Combined) Decision. 2015a
Constitutional Court 2015.9.25. 2014heonba154·398, 2015heonga3·9·14·18·20·21·25(Combined) Decision. 2015b
Constitutional Court 2019.2.28. 2016heonga13 Decision. 2019
Han SW. Constitutional studies. 11th ed. Seoul: Beobmunsa; 2021. p. 1262-1263a
Han SW. Constitutional studies. 11th ed. Seoul: Beobmunsa; 2021. p. 487-504b
Jung JW. Leg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 and tasks left behind.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Hannam University, 2021;27(2):47-94
Kwon YS. Introduction to constitutional studies. 2010 ed. Seoul: Beobmunsa; 2010. p. 1015
Lim W. Criminal law. 12th ed. Beobmunsa; 2021. p. 45-47
Supreme Court 1998.6.18. 97도2231 trial decision(All-inclusive agreement). 1998

<저자정보>
정진우(교수)